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한동 의원)

의안 번호	23-8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6. .

발 의 자 : 강동오, 고병준, 권인순,  
김승수, 남해석, 백남환,  
신종갑, 안미자, 오옥자,  
이상원, 이한동, 장정희,  
한선미, 홍지광

## 1. 제정이유

마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발주가격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역할(안 제3조, 제4조)

다.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(안 제5조)

## 3. 관계법령

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6조, 제9조의2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5. 19. ~ 5. 24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관급공사”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
  -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
  - 나. 「전기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
  - 다. 「정보통신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  - 라. 「소방시설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  - 마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
  - 바.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
2. “수급인”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(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3. “사업주”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4조(구청장의 역할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
2.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

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업주의 노력)**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
2.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
3.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고용정책 기본법

[시행 2022. 6. 16.] [법률 제18285호, 2021. 6. 15., 타법개정]

**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**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5. 26.>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, 경제·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,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,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9조의2(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·공표할 수 있다.

④ 국가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안은 관급공사 수행 사업주에 대한 마포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에 의한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일자리청년과 박효정
연 락 처	02-3153-8552